

2020-4 호

04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4 호

04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제한 조례
- 10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1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17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19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2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29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32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33 남해군 보물섬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
- 38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43 부산시의회, 부산공익업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로
부산시가 먼저 추진하다



- 45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 47 인천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의회비 반납
- 48 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 50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순화용어 사용 독려
- 51 강원도의회,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 52 전북도의회,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코로나19 극복 동참
- 53 경남도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최근 제 · 개정 법령

- 57 노인복지법
- 58 아동복지법
- 6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질의
- 67 충청북도 영동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4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제한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1.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71호, 2020. 3. 3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 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29호, 2020. 4. 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회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발생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사회서비스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또는 대행
2. 사회서비스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사회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의 상담·자문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 나. 사회서비스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 질 향상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7.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
8.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9.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10.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시설 및 사업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회서비스원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이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15조(기금) 사회서비스원은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1.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2.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16조(사업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결산보고에 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무상사용·대부할 수 있다.

제19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사회서비스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 3. 31.] [경기도조례 제6552호, 2020. 3. 3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3.] [강원도조례 제4544호, 2020. 4. 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물로서 도민경제 및 도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강원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그 밖에 연안바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4. 10.] [충청북도조례 제4380호, 2020. 4.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충청북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원·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북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도지사는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동차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자동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 대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각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5. 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금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6. 미래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전기, 수소, 대체) 자동차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친환경 스마트카로의 업종전환 유도 및 기업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7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 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2.] [전라남도조례 제5043호, 2020. 4. 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 촉진계획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3.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4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1396호, 2020. 4. 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10.]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1361호, 2020. 4.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 4. 17.] [정선군 조례 제2771호, 2020. 4.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14.] [남해군 조례 제2448호, 2020. 4. 1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남해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배송을 담당한다.
- ③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구축·운영)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판매방법)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7조(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할 때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입점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의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의 문제로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배송)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물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20조(홍보) ① 군수는 쇼핑물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물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군수는 쇼핑몰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
3. 웹사이트·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
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몰 판촉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포장재 개발·제작비
3.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17.] [합천군 조례 제2475호, 2020. 4.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합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합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군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를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한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합천군 공공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적용범위	사용료 등 근거조항
합천공설운동장	시설사용료 (축구장, 육상경기장)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합천체육관	시설사용료(체육관)	
체육공원	시설사용료(축구장)	
합천야구장	시설사용료	
가야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합천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시설사용료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8조(입장료 징수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등)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입장료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 등)
봉안담	사용료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사용료 등)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입장료 등)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4호

03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부산시의회, 부산공익앱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로

부산시가 먼저 추진하다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인천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의회비 반납

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순화용어 사용 독려

강원도의회,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전북도의회,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코로나19 극복 동참

경남도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공익앱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로 부산시가 먼저 추진하다!

- 대리운전업, 배달서비스업 등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

부산시에서 노동자 관련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형태종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리운전앱과 배달앱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에게 부당하게 책정된 높은 앱 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대리운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늦은 귀가를 도울 수 있도록 야간이동 편의 증진을 담는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해 마련하였으며 오는 5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부산시민의 심야시간대 야간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심야버스 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수수료율에 상응하는 공익앱을 부산시가 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부산시민에게도 선순환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공익앱과 같은 호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은 이동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의 운송질서 교란행위와 수익부당편취 등을 방지하며 이동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은 시장질서 교란시키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배달앱 관련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익앱 플랫폼 구축으로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 ‘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 가중 지적 -
-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제외대상 특수업종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의장단은 4월 6일(월) 오전 11시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정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 ‘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보고회 중에 모아졌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000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이날 총사업비 2,674억 원을 편성하여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한, 정부 추정

에서 추가 확보한 3,000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특히, “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고 지적하고, “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의회비 반납

- 의회 국제교류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 반납, 지역사회 고통 분담 나서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2020년 의원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인천시의회 외빈초청여비 30백만원과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6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12.6백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0백만원 등 총 65백만원을 반납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례없는 추경을 편성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의회 예산 일부를 반납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의원 해외연수 경비 등 타 예산 추가 삭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규정과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방안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 과제 등을 논의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의원인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통과 임수현 대중교통담당,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호무 세종도시교통공사 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장애인인권연대 문경희 위원장과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손정원 사무국장이 참석해 실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간담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크게 연구모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 과제로 압축됐다. 손인수 대표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교통약자 이동비용은 세종시가 가장 높은 편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 편의시설 비용 등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임에서 교통환경 개선과 추가 저상버스 도입, 노선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연구모임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제안해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가 효과적으로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수 의원은 시 관계자들에게 세종시 차원에서 마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연계한 검토 사항들을 질의했다.

이날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세종시내 도로 330여 개소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과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설치 규정의 탄력적 적용 방안, 신기술을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 대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정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선 논의나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시민 1명과 교통약자 1명을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며 “신기술 활용대안을 제안하는 것도 연구모임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 유형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상황을 반영해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어야 한다” 면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연구모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약자의 실제 입장을 대변한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세종장애인인권연대 문경희 위원장은 “점자 블록은 실제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점자 블록 공사를 할 때 교통약자를 포함시켜 설치가 잘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손정원 사무국장은 “저상버스 공급 대수를 적기에 확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인적 서비스 질 개선이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인수 대표의원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규정 정비와 저상버스 확대 도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시와 LH, 세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며 “향후 간담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집행부에 전달해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 에 걸맞은 선진적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순화용어 사용 독려

- 일제 잔재 청산은 ‘일본어 투 용어’ 청산부터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어 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2003년),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2012년)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 등이 있고, 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11.5. 구성되었으며, 2020.11.4.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 도의원 46명이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기탁 -
- 춘천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마스크를 제작하는 봉사자 격려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30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 27일 본회의 폐회 후 의원 간담회에서 제안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46명 전체 도의원은 이번 모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직접 천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눠주는 춘천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과일과 빵 등을 전달하며 봉사자들과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민들께 부족하나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하루 빨리 극복하자”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코로나19 극복 동참

- 의원 국외출장 여비 반납,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등 삭감 -
- 의회 세출 예산 구조조정, 민생경제 제도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키로 -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7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북도에 요청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에서 반납키로 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1억2400만 원, 상임위원 의원 국외연수 지원 6천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의회 교류지원 1000만 원 등 모두 3억7천400만 원이다. 이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도의회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을 반납,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께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4. 16. ~ 5. 4.(19일간), 도와 도교육청 본청 및 각 소속기관 대상으로 검사 -
- 도의원 등 10명 전문가들로 감사위원 구성, 대표위원 강철우 도의원(거창, 교육위) -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3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강철우, 손호현, 신영욱), 재정관리 전문가 4명(박충규, 정용조, 황유선, 이상진), 공인회계사 2명(김영범, 문지원), 세무사 1명(김경협)으로 모두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대해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되며, 특히 도 소속 동물위생시험소, 농업기술원, 경남대표도서관 등 3개 기관과 도 교육청 소속 창원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를 둘러보고 보다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강철우 도의원은 “결산검사는 법정사무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을 하지만 대면 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결산검사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예년보다 더욱 꼼꼼히 살펴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액은 경남도의 경우 세입결산액 9조 7,009억원, 세출결산액 9조 953억원이며, 도 교육청은 세입결산액 6조 7,169억원, 세출결산액 6조 392억원이다.

아울러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4호

04



최근 제 · 개정 법령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 송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처벌을 신설·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7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현행 제57조제5호 삭제).

2. 아동복지법

[시행 2020. 4. 7.] [법을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46조).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
-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6제2항).
-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2항).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08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개 정 문

제14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4호

0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질의

충청북도 영동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의견 20-0047, 2020. 4.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질의요지】

-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제각각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이후에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 외의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가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청장”이라 함)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가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과 범위 외의 근로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나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광진구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나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준용되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및 「민법」과 그 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사등은 2019년 이후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지방공사등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 이상을 지방공사등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조례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같은 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다항과 같은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의견 20-0060, 2020. 4. 14., 충청북도 영동군]

【질의요지】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영동군수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바, 감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동군수는 예방접종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을 디프테리아(제1호)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제16호)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제17호)으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서는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질병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64조제1항이 영동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바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사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등에게 보조 등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영동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영동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물심양면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성금 1000만 원 기부...혈액수급 위기 극복 위한 헌혈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에 나섰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일 본회의장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의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십시일반 모은 이 성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팔소매도 걸어붙였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청사 1층 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협조를 받아 혈액을 기증했다.

유병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성금과 헌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 위기가 하루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병국 의장과 홍재표·이종화 1·2부위원장, 김연·오인철·이공휘·장승재 상임위원장, 김명선·김석곤 교섭단체 원내대표, 김명숙·김은나·김한태·오인환·이계양·이선영·조승만·조철기·홍기후 의원과 의회사무처·집행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2020. 4. 7. 보도자료 -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4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